

---

# 교촌 윤리 규범

CODE OF ETHICS

---

## 서문

교촌은 교촌이 추구하는 "정도경영", "고객중심경영", "나눔경영"이라는 경영철학에 따라 "교촌의 책임과 자유"를 실천합니다.

본 규범은 교촌인이 윤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침이 됩니다.

본 규범에서 정한 일부의 행동 및 판단 기준은 법에서 정한 사항보다 엄격할 수 있으나, 이는 교촌이 "정도경영"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며, 교촌과 교촌인은 본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책임을 유념하고 자유의 원칙에 따라 어느 상황에서도 올바른 행동과 판단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합니다.

## 본문

### 제 1 장 구성원의 자세

- #### 1 / 교촌인은 리더처럼 행동합니다.
- 1-1 교촌인은 각자가 교촌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며 교촌의 명예를 지킵니다.
  - 1-2 교촌인은 상호간에 공손한 말씨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, 상대방에게 헐박·위협·모욕감을 줄 수 있는 농담, 욕설, 거짓말,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.
  - 1-3 교촌인은 동료, 상하, 거래처간에 존경과 신뢰를 쌓아 밝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  - 1-4 교촌인은 지위에 따른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, 회사의 지시와 충고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따르는 팔로워십을 가집니다.
  - 1-5 교촌인은 출퇴근 시간 및 업무 시간을 준수하고, 업무 외 시간에도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나친 음주,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으며 직장 내 폭력 및 성희롱으로 인식 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#### 2 / 교촌인은 스스로 동기부여 합니다.

- 2-1 교촌인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며,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제공함으로써 교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.
- 2-2 교촌인은 다른 구성원의 자유로운 발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, 좋은 아이디어는 회사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합니다.

### 3 / 교촌인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합니다.

- 3-1 교촌인은 각자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며, 주어진 직무를 정당한 방법을 통해 투명하게 수행합니다.
- 3-2 회사는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 한해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,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교촌인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, 해당 사실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- 3-3 교촌인은 다음의 자에게 금품, 접대, 편의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등 뇌물 수수로 보여질 수 있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으며,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습니다.
  - (1) 정부 및 공공기관·지자체 및 산하 단체, 공기업 종사자
  - (2)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국·공립·사립 교육기관 종사자
  - (3) 언론사 종사자
  - (4) (1)부터 (3)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
- 3-4 교촌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등과의 접촉 시 소속 조직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가족 및 친인척이 회사나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3-5 교촌인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  - (1)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나 협력업체,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
  - (2)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
  - (3)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협력업체와 금전대차, 공동투자, 대출보증,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
  - (4)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
  - (5)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단,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- 3-6 교촌인은 경쟁 제품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경쟁사에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3-7 교촌인은 가격 담합을 하지 않습니다. 가격과 같이 민감한 사안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경우, 경쟁사들이 참석하는 모든 모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.
- 3-8 교촌인은 사업과 관련한 법률을 준수하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습니다. 만약, 본인 및 타 임직원의 불법 및 비윤리적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립니다.

### 4 / 교촌인은 지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

- 4-1 교촌인은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고 실행할 줄 알며, 교촌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.

- 4-2 교촌인은 업무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.  
본인의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먼저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.

## 5 / 교촌인은 사무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습니다.

- 5-1 교촌인은 교촌의 모든 자산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다루며, 부당한 목적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5-2 교촌인은 부서에 배정된 예산이나 업무활동으로 지급된 경비를 승인된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하며,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5-3 교촌인은 회사의 지적 재산, 영업비밀,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보호하며, 회사의 지적 재산 및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5-4 교촌인은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손실 발생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 방지 및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.

## 6 / 교촌인은 스스로 발전합니다.

- 6-1 교촌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 및 연수, 그룹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발전하고 계속 성장합니다.
- 6-2 교촌인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하여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며, 교촌은 교촌인의 도전을 통한 실패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.

## 제 2 장 회사 구성원에 대한 책임

### 7 / 교촌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
- 7-1 교촌은 교촌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모든 교촌인이 성희롱, 차별대우,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, 폭행, 사행성 오락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.
- 7-2 교촌은 교촌인의 다양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, 교촌인의 자율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7-3 교촌은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교촌인의 자유로운 의견이 회사의 경영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.

## 8 / 교촌은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합니다.

- 8-1 교촌은 교촌인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, 교촌인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8-2 교촌은 교촌인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, 회사의 이익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저촉되지 않는 한,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.

## 9 / 교촌은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대우합니다.

- 9-1 교촌은 교촌인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,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학벌·성별·종교·출신지역·연령·장애·국적·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.
- 9-2 교촌은 교촌인의 능력과 업적을 공정한 기준을 통해 평가하며,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합니다.
- 9-3 교촌은 선입관이나 검증되지 않는 소문 등으로 교촌인을 평가하거나 매도하지 않습니다.
- 9-4 교촌은 비윤리·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 행위로 인해 신고자가 이로 인한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.
- 9-5 교촌은 공정하지 못한 처우나 회사 제도를 묵과함으로써 교촌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,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개선의 책임은 교촌에 있습니다.

## 제 3 장 고객·주주·협력업체에 대한 책임

## 10 / 교촌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시합니다.

- 10-1 교촌은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고객을 대합니다.
- 10-2 교촌은 고객의 요구 사항과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,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.
- 10-3 교촌은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 수준을 유지합니다.
- 10-4 교촌은 제품의 개발, 생산, 유통, 판매 및 폐기 등 모든 사업 활동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합니다.
- 10-5 교촌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, 고객이 합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합니다.

## 11 / 교촌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
- 11-1 교촌은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며,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합니다.
- 11-2 교촌은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업 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며,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는 해당 국가의 기준과 법규를 철저히 따릅니다.

## 12 / 교촌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.

- 12-1 교촌은 끊임없는 혁신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,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합니다.

## 13 / 교촌은 협력업체와 공존공영의 관계를 구축합니다.

- 13-1 교촌은 모든 협력업체를 고객 만족이라는 공동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합니다.
- 13-2 교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며, 다른 협력업체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특정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거나 거래를 종료하지 않습니다.
- 13-3 교촌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추구합니다.
- 13-4 교촌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지 않습니다. 만일 협력업체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, 모든 교촌인은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반환하며, 그 처리 결과를 선물 반송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단,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거나 반송처가 불분명한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.
- 13-5 교촌은 협력업체가 사업장의 안전과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적극 권장하여, 협력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## 14 / 교촌은 고객과 주주 그리고 협력업체의 정보를 소중히 합니다

- 14-1 교촌인은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며, IT 보안 시스템 및 개인정보관리자를 운영하는 등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- 14-2 교촌인은 주주의 개인신상 및 주요 정보를 외부로 노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, 협력업체와의 계약 조건 및 계약 전반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고 협력업체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14-3 교촌인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가 분실 또는 무단전송 되었거나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공격을 당한 경우, 즉시 보안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
## 제 4 장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

### 15 / 교촌은 나눔을 실천하며, 환경보호 및 안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합니다.

- 15-1 교촌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자원봉사,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합니다.
- 15-2 교촌은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, 문화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.
- 15-3 교촌은 사업 및 영업활동 시,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, 해당 국가와 지역의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관리에방에 최선을 다합니다.

### 16 / 교촌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합니다.

- 16-1 교촌은 교촌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합니다. 단,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 활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.
- 16-2 교촌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,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, 정당, 정치 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회사의 이해와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5 장 정도규율의 준수

### 17 / 교촌인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교촌의 책임과 자유를 반드시 준수 합니다.

- 17-1 교촌인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교촌의 책임과 자유를 성실히 준수하며, 이를 위반한 교촌인은 인사규정 또는 징계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습니다.
- 17-2 교촌인은 교촌의 책임과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각 감사조직이나 인사팀에 알리고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. 각 감사조직이나 인사팀은 교촌인에 의한 항의, 신고, 제보 및 고발에 대하여 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### 1. 시행 시기

본 규범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.

### 2. 정도실천 세부 지침(윤리 행동 기준)

교촌의 책임과 자유를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금품, 향응, 접대수수와 관련된 것 등 교촌인이 준수해야 할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### 3. 자문

본 규범에 대해 의문점이나 정도강령과 정도실천 세부 지침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준법지원부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하며, 그 결정에 따릅니다.

### 4.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

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근간이 되는 본 규범과 정도실천 세부 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합니다.